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8일, 김주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주영의원)

현행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의 일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왔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 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은 물론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함)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을회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마을회등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